

[참고자료5]

지원자격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

경 력 내 용	환산인정률(%)
<p>1. 교육경력</p> <p>가. 사관학교의 교관(조교수이상의 교수직에 한함)으로 근무한 경력</p> <p>나. 학력인정을 받는 전문대학이상의 각종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</p> <p>다.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(단, 한 학기 합산 주당 9시간 이상인 경우는 70% 인정, 6~8시간은 50% 인정, 5시간 이하는 30% 인정)</p>	<p>100</p> <p>100</p> <p>30 ~ 70</p>
<p>2. 연구경력</p> <p>가. 최종학위 취득자</p> <p>①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</p> <p>② 석사학위 과정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</p> <p>나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전임으로 실시한 연구경력</p> <p>다. 벤처기업육성법,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경력</p>	<p>석.박사과정 재학년수 (5년을 초과할 수 없음)</p> <p>석사과정 재학년수 (2년을 초과할 수 없음)</p> <p>100</p> <p>100</p>
<p>3. 산업체 등 근무경력</p> <p>가. 국가기관, 공공단체, 국영기업, 민간기업 등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</p>	<p>100</p>